

**MATERIAL SAFETY DATA SHEET**

---

Number: No.03-2-039-(1)-E-(C)

발행일: 2004 년 8 월 23 일

수정일: 2006 년 5 월 30 일

**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**

제품코드: -

제품명: Exafine Putty type - Catalyst

제조사: GC Dental Products Corporation

주소: 2-285, Toriimatsu-cho, Kasugai-shi, Aichi 486-0844

본사: GC Corporation

주소: 76-1 Hasunuma-Cho, Itabashi-Ku, Tokyo, Japan

우편 174-8585, 전화 81-3-3965-1388

**2. 유해, 위험성**

비상시 개요: 특별위험요소 없음

발생가능한 건강상의 영향

눈: 경미한 자극을 줄 수 있음.

피부: 특별한 위험성 없음.

섭취: 특별한 위험성 없음.

흡입: 정상적 사용시 특별위험성분없음.

**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**

(% chemical components by WT)

Vinyldimethylpolysiloxane (CAS 68083-19-2)

25%

Silicon dioxide (CAS 112926-00-8)

75%

Platinum complex (CAS 7440-06-4)

<0.1

Pigment blue (CAS 1345-16-0)

<0.1

**4. 응급조치요령**

눈: 많은 양의 물로 최소 15 분간 헹굴 것.

피부: 일반적으로 본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음.

섭취: 만약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

흡입: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, 불편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

**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**

가연성 성질: 없음

발화점: 해당없음.

가연성 한계: 자료없음

자연발화온도: 본 제품은 자연발화되지않음

위험연소물질: 알려진 바 없음

소화물질: 화학거품, 이산화탄소, 건조화학물질

소화지침: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.

**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**

사람과 관련된 안전수칙: 요구되는 바 없음.

환경보호를 위한 방법: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.

**청소 및 제거를 위한 방법:** 기계적으로 제거할 것.  
**부가정보:** 어떤 위험한 물질도 방출되지 않음.

**7. 취급 및 저장방법**

**취급:**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.  
**저장:** 실온에 보관할 것. 열과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할 것.

**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**

**호흡기보호:** 요구되지 않음.  
**피부보호:** 요구되지 않음.  
**눈 보호:**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음.  
**노출 가이드라인(s):** 제품은 작업장에서 모니터링 되어져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.  
**기술적 제어:**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음.

**9. 물리화학적특성**

**외관:** 파란색 페이스트  
**향:** 무향  
**끓는점:** 미확인  
**증기압력:** 자료없음.  
**증기밀도:** 자료없음.  
**물속에서의 용해성:** 없음  
**구체 중력:** 자료없음  
**녹는점:** 해당없음  
**pH:** 해당없음  
**휘발성:** 해당없음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**안정성:** 안정  
**배합금지:** 해당없음  
**유해분해요소:** 유해분해요소 알려진 바 없음.  
**유해중합:** 유해중합 알려진 바 없음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

**급성독성:** 해당없음.  
**초기자극증상:**  
**피부:** 자극없음  
**눈:** 자극없음  
**부가독성정보:**  
설명서에 따라 사용 및 취급한다면, 공급받은 정보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, 본 제품은 어떤 유해성도 끼치지 않는다.

**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**
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항 없음.

**13. 폐기시 주의사항**

처리시에는 반드시 해당지역법을 준수해야 한다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**IMO 규정:** 해당없음.  
**ICAO, IATA 규정:** 해당없음.

**15. 법적 규제사항**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

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에 따라 MSDS 배포, 제품취급, 기타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.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:

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숙지하고 해당내용에 따라 취급한다.

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:

위험물안전관리법을 숙지하고 해당내용에 따라 취급한다.
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내용 기재:

폐기물관리법 해당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
**16. 기타 참고사항**

특별 참고사항 없음.

위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. 그러나,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사항은 없다.  
제조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짐